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가단526425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나3417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가단5264253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음

담당변호사 문강석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서

변론종결 2021. 4. 29.

판결선고 2021. 5. 2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기재 음식점 영업에 관하여 2017. 11. 1. 체결한 영업양수도계약을 55,223,10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223,1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7. 4.경부터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라고 한다)과 C가 운영하는 13개 음식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물품거래를 하여 왔다.

나. 원고는 C가 위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7. 7. 20.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단13341호로 각 영업장별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42,848,640원(그 중 별지 기재 음식점의 미수금은 8,412,254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20. 'C는 원고에게 42,848,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는 2017. 11. 1.경 피고에게 C가 운영하던 별지 기재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영업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17. 11. 1. 이 사건 음식점 건물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라. 피고는 C에 2017. 11. 1. 35,000,000원, 2017. 12. 8. 5,000,000원, 2017. 12. 15. 1,050,000원, 2017. 12. 20. 210,000원, 2018. 1. 15. 841,291원, 2018. 1. 22. 630,000원,

2018. 2. 1. 28,000,000원 등 합계 70,731,291원을 영업양수대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채13710호로 채무자 C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8. 2. 12.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제3채무자인 E은행으로부터 4,567,855원을 추심하였다.

바.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1665호로 채무자 C가 제3채무자 피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양도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임대보증금, 시설대금, 계약금 및 잔금, 권리금 등 채권 중 청구금액 46,274,074원(이 사건 물품대금 판결의 원금 42,848,640원과 이에 대한 2017. 8. 1.부터 2018. 2. 8.까지 192일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380,934원, 집행비용 44,5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8. 2. 2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사. 원고는 2018. 3. 7.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4047호로, ① 피고가 2017. 11. 1. C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양수하였음에도 C에 지급하여야 할 영업양수대금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미지급 영업양수대금 중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물품대금인 41,706,219원(이 사건 물품대금 판결에 따른 2018. 2. 8.까지의 물품대금 원리금에서 원고가 이미 추심한 4,567,855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거나, 선택적으로 ② 피고는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서 C의 원고에 대한 위 미지급 물품대금 41,706,219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추심금 등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추심금 등 청구의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2018. 4. 5.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6816).

아. 원고는 이 사건 추심금 등 청구의 소의 청구금액인 41,706,219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① 2018.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단1148호로 채무자 피고가 제3채무자 F, G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② 2018.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단2193호로 채무자 피고가 제3채무자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 등에 대하여 가지는 신용카드 결제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자. 피고는 이 사건 추심금 청구의 소가 제기되자 2018. 9. 19. '피고가 2017. 11. 1. C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양수하였고, 2018. 2. 1.까지 영업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이 답변서는 2018. 9. 2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차.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9. 6. 14. 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던 당시 피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양수대금으로 위와 같이 지급된 70,731,291원을 초과하여 영업양수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배척하는 대신, ② 피고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양도하던 당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에 관하여 부담하고 있던 물품대금채무 8,412,25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2019. 7. 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2,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 내지 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을 제23,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요지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에도 2017. 11. 1. 피고와 이 사건 음식점 영업에 관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양도하였다.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55,223,10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55,223,1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판단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참조).

2)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가 2017. 11. 1.경 피고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 영업양도대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2018. 2. 12. 무렵, 또는 아무리 늦어도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H 등에 대하여 가지는 신용카드 결제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2018. 10. 12. 무렵에는 C가 피고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당시 이미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2017. 12. 7. C가 E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제3채무자인 E은행이 제출한 제3채무자 진술서를 통하여 C의 채권의 존부와 범위 등을 확인하였을 것이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2018. 2. 12. E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 판결에 따른 채권액의 10% 정도인 4,567,855원만을 추심하였다.

② 원고는 'C가 2017. 11. 1.경 피고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 영업양도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2. 12.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제3채무자인 피고가 제출한 제3채무자 진술서를

통하여 C의 채권의 존부와 범위 등을 확인하였을 것이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위 피압류채권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을 무렵에는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

③ 원고는 2018. 3. 7.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C가 미지급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추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과정에서 '실제 C와 피고 사이에 2017. 11. 1.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되었고, 영업양도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2018. 9. 27. 송달받기도 하였다.

④ 원고는 C에 대한 채무자 또는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에 대하여 2018. 5. 18.과 2018. 10. 12. 피고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나 신용카드 결제대금 채권 등에 대하여 각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정작 원고의 채무자인 C에 대하여는 2018. 2. 12.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후로는 채무변제를 독촉하거나, C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3) 결국 원고가 위와 같이 채권자취소의 원인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9. 11.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훈

[별지]

서울 서초구 I건물 J호, K호, L호 소재

M 본점. 끝.